

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,495톤으로

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64%,

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의 90%가

서울시 내에서 처리되지 못하여

막대한 처리 비용과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.

○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에 따라

‘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’이 법제화될 예정으로,

관련 내용을 조례에 사전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

○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

둘 이상의 자치구에서 발생하는

음식물류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

시장이 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

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습니다.

○ 또한,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

관할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혹은

관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
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

‘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